

혐오표현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적 연대, 교육의 적극적 고려 및 기술의 이용이 중요하다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늘 토론의 쟁점은 이와 같은 혐오표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제 내지는 제어할 것인가일 것이다. 오픈넷은 모든 비난과 조롱 등 감정표현을 금지하려 하지 말고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착하여 비례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등의 법률과 제도로 표현에 대해 강한 국가 규제 기초를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부재하다. 대신 모욕죄가 혐오표현 규제를 대신하고 있다. 모욕죄는 범위가 매우 넓고 모욕을 처벌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입법취지로 하여 제정되었기에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생산하고 있다. 모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에 문제적이다. 일반인에게 서울시장이나 하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이에게 같은 말을 하면 그는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올바른 말을 말하더라도 모욕적일 수 있다. 예술가가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하거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그와 같은 비판의 발언을 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올바른 표현이라 하더라도 비판의 당사자는 모욕을 느꼈다고 불쾌해할 수 있다. 이렇듯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모욕죄는 더군다나 형사 처벌의 형태로 존재하기에 현실에서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탓에 모욕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주요 국제인권기구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오픈넷이 제네바에서 참가한 대한민국 인권협약 심의에서도 거론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호에서 특히 의견이나 감정의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는 종교, 국적, 인종에 따른 적대 및 차별의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사례, 혐오표현의 내용·효과까지 포함하여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에 따라 혐오표현 대응책을 세우려면 이미 발제자분도 언급하셨지만, 차별금지를 토대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급선무다.

한국 역시 차별금지를 토대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 . .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 .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다. 형사처벌하지는 않지만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겪어왔던 차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표현만을 골라서 적용한다면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너뛰거나 차별금지법과 무관한 모욕죄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만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춘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조인영 선생님께서 구분한 3단계로 분류된 혐오표현 중 법적인 규제가 어렵거나 필요성이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세세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과학계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오픈넷은 이에 대해 두가지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대항표현 장려 그리고 시민 대상의 교육이 해답이라 생각한다. 조인영 선생님께서 참조하신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은 이 맥락에 포함될 것이다. 이 행동계획의 13개 약속 중의 어느 하나도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주시해야 한다. 오픈넷은 모욕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와 대항표현, 교육 활동을 병행해왔다. 그 중 2021년 2월 24일 오픈넷이 개최한 대항표현에 관한 포럼의 발제 내용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포럼의 발제자였던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인 캐시 버거는 SNS 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대해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주었다. 연구 결과 혐오표현을 발화하는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SNS 상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이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 대항표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보다 많아야 효과가 컸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대항표현을 하거나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컸다고 한다. 그 외 오픈넷은 가짜뉴스, 혐오표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두 번째, 유엔전략의 13개 약속 중의 하나가 “기술의 이용”이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은 혐오표현이 증폭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플랫폼들이 혐오표현을 자발적으로 억누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플랫폼은 민간기업이므로 법적 혐오표현에 포함되지 않는 게시글을 제어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규제필요성이 애매모호한 글들도 통제할 수 있다.